

[파일무단삭제]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, 클라우드 계정의 id, pw 무단 변경, 파일 무단 삭제 등 업무방해행위 -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, 정통망범위반죄 성립, 행위자 형사처벌 사례 2018년 선고 판결



## 관련 법령

**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**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

**지)**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"악성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71조(벌칙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9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10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

**서울동부지방법원 2018. 12. 18. 선고 2018고정709 판결**

### **사안의 개요**

- (1) 피고인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(관리비 정산 프로그램)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, 약 한달 정도 회사의 접근 불가, 사용불가 상황 발생

- (2) “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.”

### 법원의 판단

벌금 150만원 선고,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

### 대구지방법원 2018. 11. 27. 선고 2018고정896 판결

### 사안의 개요

- (1) 피고인은 회사의 경매 관련 블로그의 제작, 관리업무 아르바이트 수행
- (2)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, 정보를 무단 삭제, 블로그 아이디, 비밀번호 무단 변경
- (3) “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.”

### 법원의 판단

벌금 150만원 선고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, 업무방해 성립

**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9. 5. 선고 2018고정84 판결**

**사안의 개요**

- (1)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
- (2)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일지 작성, 홍보, 블로그 작업 등 업무방해

**법원의 판단**

벌금 300만원 선고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

**창원지방법원 2018. 4. 18. 선고 2017고정1001 판결**

**사안의 개요**

- (1) 업무용 자료를 보관, 공유,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'NAS(Network-Attached

Storage)'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

- (2) 피해자가 'NAS'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당된 아이피주소를 'NAS'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주소로 등록
- (3) 'NAS' 시스템에 보관 중인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무단 삭제
- (4) “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.”

### **법원의 판단**

벌금 300만원 선고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

민형사소송, 파일삭제, 업무방해, 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